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**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**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윤 석 열 인

2023년 10월 31일

국 무 총 리 한 덕 수

국 무 위 원 추 경 호
기 획 재 정 부 관

● **대통령령 제33833호**

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“2023년 10월 31일”을 각각 “2023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◇ **개정이유 및 주요내용**

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·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‘2023년 10월 31일까지’에서 ‘2023년 12월 31일까지’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